

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출자·출연 및 자금 차입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출자·출연할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 또는 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의 사유 및 금액, 차입기관 등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 발행방법 및 절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채권의 발행방법을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로 정하고 그 밖에 채권의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21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해역·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현황 및 수거·정화 등 처리 실적
2. 해역관리청이 관할 해역·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및 그 밖의 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의 현황
3. 관할 해역·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
 - 가. 법 제6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 나. 하천 등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
 -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
 - 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복원 및 사후관리
 - 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 바.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2의 해역을 말한다.

제5조(매립·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준설토사(浚渫土砂: 물 밑에서 파낸 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개류의 껍데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고립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스트림 중 이산화탄소가 산업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과 이산화탄소의 포집(捕執)·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할 것
2.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처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을 것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물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일)을 말한다

2. 어장 정화를 위한 오염퇴적물의 교체

제1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능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2. 해양폐기물등의 수거·정화 활동
3.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해양폐기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점검·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능력,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3.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의 접수
5.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거·정화의 명령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 허가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8.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명령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
1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및 재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설물질의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4.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
1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의 접수
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접수
18.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1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접수
2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21. 법 제28조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22.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2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과 출입 확인·점검·검사
24.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의 수거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4.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운영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6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폐기물의”를 “오염물질의”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부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한다.

제94조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란(중전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1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 폐기물해양수거업란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토목, 포목 및 구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⑧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1.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 가. 어류·패류의 깃갈 또는 그 깃갈의 생산·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나. 수산물 가공잔재물[조개껍데기 등 각질류(殼質類: 수산물의 단단한 껍데기)는 제외한다]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로서 제조·가공 과정에서 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화학적 처리 등을 거쳐 발생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2. 무기성(無機性) 폐기물

- 가. 수산물 가공잔재물 또는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할 때에 수거되는 폐기물 중 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나. 합성로프, 페어구, 플라스틱류, 닝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물질 제거한 준설토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

4. 그 밖에 의정서에 따라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 배출 해역, 배출 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가. 육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했을 것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을 것

[별표 2]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배출가능해역
1. 갑해역: 북위 38도의 선, 북위 37도 45분의 선, 동경 132도 15분의 선 및 동경 132도 30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갑해역 전역
2. 병해역: 영해 기선으로부터 50해리 밖의 해역	가. 동해 병해역: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6도 04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5도 46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나. 서해 병해역: 북위 36도 12분의 선, 북위 35도 27분의 선, 동경 124도 13분의 선 및 동경 124도 38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p>3. 정해역: 병해역과 무해역 사이의 해역</p>	<p>가. 동해 정해역: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도 21분과 동경 130도 19분의 점, 북위 35도 10분과 동경 130도 09분의 점 및 북위 35도 08분과 동경 129도 43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p> <p>나. 가목 외의 정해역: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p>
<p>4. 무해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의 범위 안의 해역</p>	<p>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p>

비고: 위 표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역은 무해역에서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3.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별표 3]

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단위: mg/kg, 건중량(乾重量) 기준]

항목	기준
1. 크롬 또는 그 화합물	80
2. 아연 또는 그 화합물	180
3. 구리 또는 그 화합물	60
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5
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25
6.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8
7. 납 또는 그 화합물	45
8. 니켈 또는 그 화합물	35
9. 총 폴리염화비페닐	0.023
10.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2.64
11. 총 질소	1,500
12. 총 인	500

비고

1. 법 제18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은 오염도가 위 표의 항목별 기준 이하인 준설품질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하고,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2.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의 기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어항 부지 등 토지의 조성을 위한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기술능력 기준
1. 폐기물해양배출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폐기물수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잠수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씩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기술능력 기준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해당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2호	250만원
라.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3호	250만원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50만원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경우 또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5호	150만원
사.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6호	250만원
아.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제2호	100만원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의 절차,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그 용도,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 및 별표 1)

어류·패류의 젓갈 또는 그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유기성 폐기물, 조개류의 껍데기 등 무기성 폐기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함.

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 절차(제6조 및 제8조)

폐기물의 고립 허가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각 계획서 및 해역이용협의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

립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지중저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다.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용도(제9조 및 별표 3)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오염도 기준을 카드뮴·수은·납 등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건중량(乾重量)으로 정하고, 준설물질의 활용 용도로 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교체 등을 정함.

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

폐기물해양배출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등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12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기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운행정보, 자동차의 차대번호·부품 및 사양 정보의 관리

4의2.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관한 연구

제104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단서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1호	700
나. 보험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호	10,000